

arts change the world

2020년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인권영향평가

2020.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2020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

2020년 12월 인쇄  
2020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0. 12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2020년도 한국예술문화위원회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평가자

- 1차(내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차(외부) : 한국표준협회

2. 평가기간 : 2020. 10. 20. ~ 12. 28.

2020년 12월 28일

## 목 차

### 제1장 인권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제1절 : 도전과 기회	8
1.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 제도에 따른 리스크 증가	8
2.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강화 기회	8
제2절 : 글로벌 동향	8
1.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	8
2.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관련 법·제도 선진사례	11
제3절 : 국내동향	13
1. 인권경영 제도화 전개	13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13

### 제2장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제1절 : 인권영향평가 의의	16
제2절 :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특징	17
제3절 :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18
1. 인권영향평가 실행체계	18
2.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19
제4절 :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20
1. 사전 정보	20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20

### 제3장 문학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1절 : 평가 종합	23
1. 총평	23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24
제2절 : 항목별 평가	25
1. 공통	25
2.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26

3. 문예지 발간지원	27
4.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29
5.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30
<b>제4장 예술극장운영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b>	
제1절 : 평가 종합	32
1. 총평	32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33
제2절 : 항목별 평가	34
1. 대관	34
2. 공연	35
3. 접근성	36
4. 안전·보건	37
<b>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 제안</b>	
제1절 : 전략체계	39
제2절 : 2021-2023 중점 추진 과제	40
<b>부록 평가 세부결과</b>	43

# 제1장

---

## 인권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 제1절 : 도전과 기회

1. 기업의 인권준중 책임 이행 제도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2.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강화 기회

### 제2절 : 글로벌 동향

1.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
2.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관련 법·제도 선진사례

### 제3절 : 국내동향

1. 인권경영 제도화 전개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 제1절 도전과 기회

## 1.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 제도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법적 리스크 증가	경제적 리스크 증가	평판 리스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이슈가 주요 의제로 대두</li> <li>• 관할권 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강조</li> <li>• 인권침해 관련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수립 및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이슈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대두</li> <li>• 벌금 및 손해배상 비용 증가</li> <li>• 투자 및 소비 결정 과정에 인권 이슈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유치, 매출 증대, 우수 인재 확보에 부정적 영향</li> <li>• 기업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에 개선비용 증가로 연계</li> </ul>

## 2.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강화 기회

리스크 예방 및 완화	경쟁력 강화	평판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 체계 구축</li> <li>• 인권존중 문화 정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유치 및 매출 증대</li> <li>• 우수 인재 확보</li> <li>• 사업기회 증가</li> <li>• 기업 지속가능성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li> <li>• 투자 유치, 매출 증대, 우수인재 확보 선순환 구조 정착</li> </ul>

## 제2절 글로벌 동향

## 1.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

구분	세부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연합의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li> <li>• 국제인권규범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표방하는 기준과 절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정리·체계화한 결과물로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li> </ul>
기타 CSR 규범과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일하게 UN 회원국이 승인한 규범으로, 가입국의 법과 제도, 정책에 적용되어 기업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li> <li>•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협력적 패러다임을 넘어 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li> </ul>

구분	세부 내용
기타 CSR 규범과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사법적·비사법적 구제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기업 내 구제절차 수립 및 이행 책임은 물론 국가의 개입 여지 확대</li> <li>• 영향권을 기준으로 기업의 인권 책임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공급망 관리에 관한 책임이 중요하게 대두</li> </ul>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p>〈국가의 보호의무, para.1~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같은 제3자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li> <li>• 관할권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대 표명</li> <li>•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회사법과 같은 기업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집행</li> <li>•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과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추가적 조치 시행</li> <li>•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었거나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공적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나 조달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li> <li>• 투자조약을 체결하거나 다자 간 기구에 참여할 때에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li> </ul> <p>〈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para.11~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에 따라 인권을 존중</li> <li>•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구축</li> <li>•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한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li> <li>• 이행결과 개선 조치는 기업 정책과 통합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실행 성과를 추적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li> <li>• 전 과정에서 인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li> </ul> <p>〈구제에 대한 접근, para.25~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li> <li>•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li> <li>•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운영이 정당해야 하며, 피해자가 접근 가능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가 예측가능하며, 피해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고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운영</li> <li>• 고충처리 절차 이행 결과와 구제조치가 인권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고충처리 절차는 참여와 화해에 기초</li> </ul>
이행 기구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또는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운영으로 UNGPs의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보급과 이행</li> <li>• UNGPs 이행과 관련된 모든 주체(정부, 기업,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권리보유자 등)들과 우수사례 및 경험, 정보 공유</li> </ul>

구분	세부 내용
이행 기구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 자문제공과 권고는 물론, 역량 강화 및 UNGPs 활용 촉진 지원</li> <li>• 국가방문 수행</li> <li>• 분쟁지역을 포함해 기업활동의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인권침해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의 옵션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권고</li> <li>• 임무 수행 전반에 젠더 관점을 견지하고, 취약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특히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li> <li>•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절차, UN과 기타 국제기구, 조약기구와 지역 인권기구와의 긴밀한 협력</li> <li>• 정부와 기업과 인권에 관한 모든 행위자(유엔기구,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정기적인 대화 및 협력 논의</li> <li>•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포럼 주최</li> <li>•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연례 보고</li> <li>•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Agenda 2030) 관점에서 UNGPs 이행 고려</li> </ul>

## 2.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관련 법·제도 선진 사례

구 분	세부 내용
<p>기업 인권실사법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프랑스, 201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기업 연례보고서에 협력업체 및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과 실사보고서 공개</li> <li>• (대상) 기업본사 및 프랑스 소재 자회사에 5천명 이상의 직원을 2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협력업체 및 공급망에 직원 1만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상 기업일지라도 모회사에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li> <li>• (제재) 비공개 시 최대 1천 만 유로 벌금 부과, 손해 발생 시 최대 3천만 유로 벌금 부과</li> <li>• (특징) 인권실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의무화.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외에도 누구에게나 원고 자격이 주어지며, 포괄적인 인권실사 의무 관점에서 접근</li> </ul>
<p>도드-프랭크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 (분쟁광물 실사 및 공개의무), 미국, 20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콩고민주공화국 분쟁광물 - 주석, 텅스텐, 탄탈륨 - 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관련 리스크를 설명하고, 공급망 인권실사 이행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li> <li>• (대상)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분쟁광물 공급 업체</li> <li>• (제재) 분쟁광물을 제공하고 있는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li> <li>• (특징) 규제대상 광물과 지역 확대 논의 - 인도네시아산 주석, 콜롬비아산 텅스텐, 구리, 다이아몬드, 알루미늄, 철, 코발트 등</li> </ul>
<p>분쟁광물 규정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EU, 201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분쟁광물을 수입하는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원산지 추적 시스템, 위험관리, 제3자 감시, 정보공개 등의 의무를 준수하고 연계보고서 제출</li> <li>• (대상) EU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기업</li> <li>• (제재) 자발성에 기초</li> <li>• (특징) 2021년부터 기업 적용</li> </ul>
<p>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Act), 20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공급망의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 검증, 감사, 증명, 내부절차, 교육 - 을 공시해 소비자들의 동참 유도</li> <li>• (대상) 전 세계 총 매출액 1억 달러 이상 캘리포니아 소재 대형 소매점과 제조업체</li> <li>• (제재) 공시 위반 시 주 법무장관이 기소, 보고를 강제</li> <li>• (특징) 호주, 영국, 워싱턴, 미연방 의회에서 동일한 법률이 상정되고 시행되는데 영향</li> </ul>
<p>현대판 노예방지법 (Modern Slavery Act) 제54조 (공급망 내 투명성), 영국, 201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현대판 노예 문제에 대응에 관한 의지표명과 이행성과 - 기업 및 공급망 거버넌스, 노예제와 인신매매 관련 정책, 기업 및 공급망 실사 절차, 위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조치와 모니터링, 교육 현황 - 를 공시</li> <li>• (대상) 영국에서 활동하는 연간 매출액 3,600만 파운드 이상의 모든 기업</li> <li>• (제재) 공시 준수, 공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설명 - Comply or Explain</li> </ul>

구 분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징)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정부 조치 지침 원칙(Principles to Guide Government Action to Combat Human Trafficking in Global Chains, 2018) 발표</li> </ul>
<p>현대판 노예방지법 (Modern Slavery Act), 호주, 2018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 대응조치 - 기업 거버넌스, 운영, 공급망, 사업활동 및 공급망에서의 잠재적인 리스크, 실사 프로세스, 개선조치 - 를 포함한 연례보고서 제출</li> <li>• (대상) 연간 매출액 1억 호주달러 이상의 모든 기업</li> <li>• (제재)</li> <li>• (특징) 공공기관은 호주연방에서 보고, 중소기업은 자발적 참여 권고</li> </ul>
<p>현대판 노예방지법 (Modern Slavery Act), 캐나다, 2018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상품 제조, 생산, 재배, 채굴 또는 가공하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노동 관행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정보 공시</li> <li>• (대상)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2천만 캐나다 달러 자산 이상, 4천만 캐나다 달러 수입 상, 평균 250명 이상 고용 기업</li> <li>• (제재) 벌금부과, 수입금지</li> </ul>

### 제3절 국내 동향

## 1. 인권경영 국내 제도화 전개

도입 준비 (2008-2013)	제도화 전환 (2014-2016)	정착 및 확산 (2017-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한국형 가이드라인 적용방안 연구 (2008)</li> <li>• 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2009)</li> <li>• 기업과 인권관련 국내 법·제도·정책·관행 개선에 관한 연구 (2012)</li> <li>•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2012)</li> <li>• 인권경영 교재개발 (20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우수사례 평가지표 개발 연구(2014)</li> <li>•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2014)</li> <li>•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 수립 연구(2015)/수립권고(2016)</li> <li>• 기업과 인권 로드맵 수립 연구 (2016)</li> <li>•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20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2017)/매뉴얼 적용 권고 (2018)</li> <li>•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항목 신설(2017)</li> <li>• 제3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 Chapter 추가 (2018)</li> <li>• 정부부처 및 광역지자체 인권위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권고 수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지표 신설(2019)</li> <li>• 민간기업 인권경영 지침 수립 추진(법무부, 2019)</li> <li>•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2018)/시행 (2019)</li> <li>•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인권위-법무부 업무 협약 체결(2020)</li> </ul>

##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영역	항목	세부 내용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li> <li>• 실행 제도 구축</li> <li>• 인권경영위원회 구성</li> <li>• 교육과 훈련 실시</li> </ul>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li> <li>• 인권실태조사</li> <li>• 인권경영선언문에 대한 최고경영진 승인</li> <li>• 인권경영선언문 공표</li> </ul>
	기관 내 각 부서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 소통채널(홈페이지, 방송, 사보, 인트라넷 등)</li> <li>• 인쇄물 사업장 게시</li> <li>• 인권교육에 포함</li> </ul>

영역	항목	세부 내용
인권경영 체계구축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와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지사, 자회사 및 협력사</li> <li>• 공급망, 에이전트</li> <li>• 지역 언어로 번역 제공</li> </ul>
인권영향 평가 실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계획 수립</li> <li>•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li> <li>• 대상 주요사업 선정</li> </ul>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li> <li>• 평가 시행 및 인권경영위원회 자문경청</li> <li>•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li> </ul>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경영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리스크 분석 및 검토</li> <li>•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우선순위 선정</li> <li>• 개선조치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li> <li>• 실행 및 성과 추적</li> </ul>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성과 정보 체계적 관리(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개선조치 실행 등)</li> <li>• 실행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li> <li>• 실행성과보고서 정기적 공개</li> </ul>
구제절차 제공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내 운용 중인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효용성 평가</li> <li>• 우수사례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리스크 검토</li> </ul>
	구제절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 기구 설치 및 전담자 지정</li> <li>• 구제 매뉴얼/지침 마련</li> <li>• 인권전문가 자문 경청</li> <li>• 구제절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훈련 제공</li> </ul>
	구제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 매뉴얼/지침에 의거 시행</li> <li>•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 접근성, 신뢰성 확보</li> </ul>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절차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li> </ul>

## 제2장

---

### 인권영향평가 개요

제1절 인권영향평가 의의

제2절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특징

제3절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1. 인권영향평가 실행체계
2.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제4절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1. 사전 정보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제1절 인권영향평가 의의

### 1.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대응

구분	세부 내용
제도화 취지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국내이행의 효과적 접근 방식으로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준수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산을 위한 전략적 조치
공공기관 인권경영 요구	• 국가의 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위원회 또한 국가의 특수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국내법과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의 인권존중과 보호·충족 의무 이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

구분	세부 내용
실무능력 강화	• 인권영향평가 수행 과정은 담당 부서는 물론 조직구성원들이 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관련 인권이슈, 법령, 위원회 내부규정, 정책과 제도, 실천계획을 정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조직적 성과	• 인권경영 필요성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확산과 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및 성과정보 수집체계 강화에 기여

## 제2절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특징

### 1. 개념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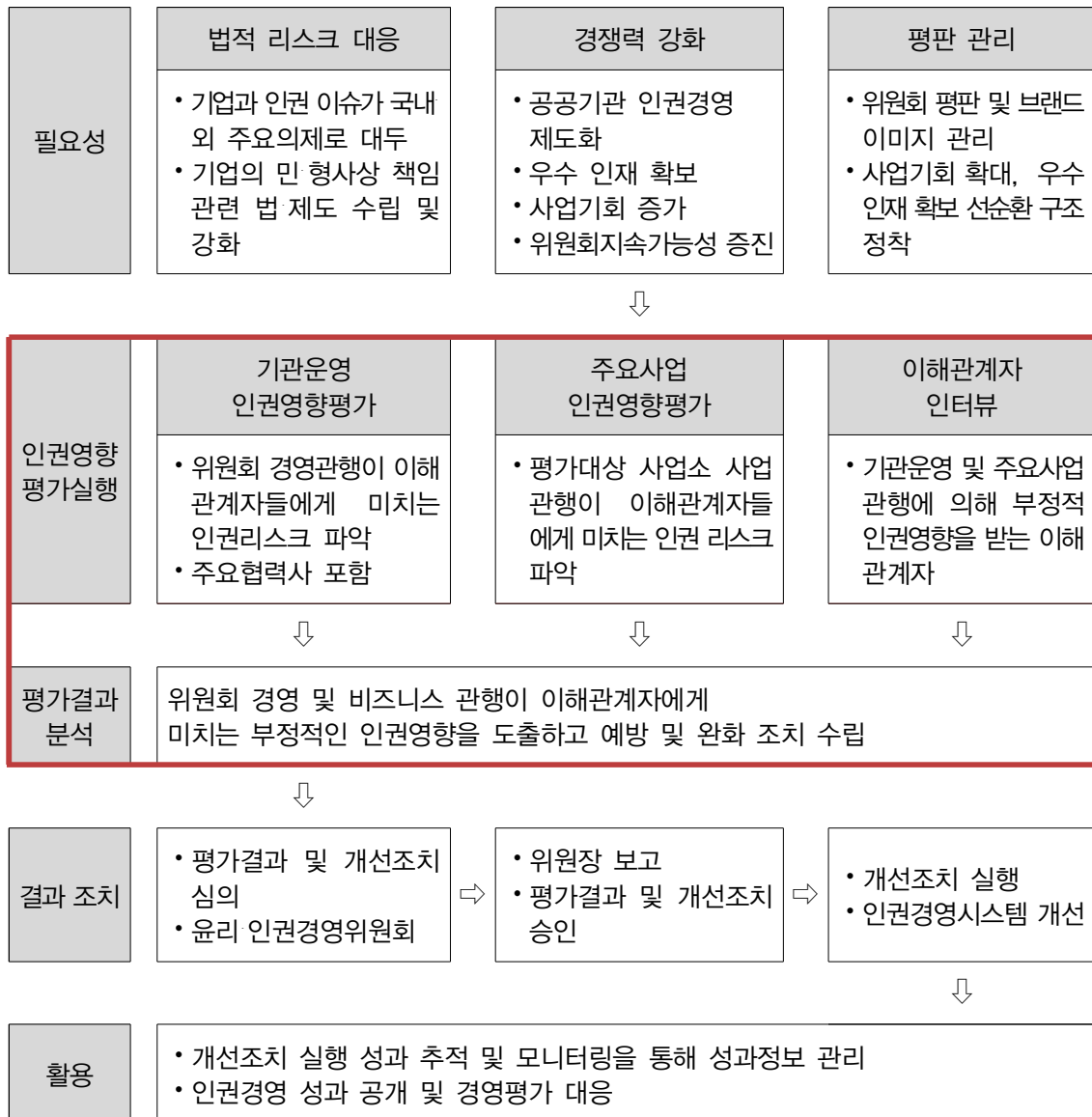
구분	개념
인권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ponsibility of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R.</li> <li>• 국내 법률 및 국제사회에서 선언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시 이를 다루는 위원회 경영 활동</li> </ul>
인권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ystem for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R.</li> <li>• 인권경영 이행 체계로 정책선언, 이행 시스템 구축과 실행, 실행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을 포함</li> </ul>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e Diligence</li> <li>• 위원회의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예방 및 완화 조치 시행, 실행 성과 추적 및 공개 과정을 의미함</li> <li>•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 성과를 위원회의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 증거로 판단</li> </ul>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li> <li>•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의 핵심 도구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li> <li>•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원칙과 절차 수행이 요구됨</li> </ul>

### 2. 특징 및 주요 요소

구분	개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과 구별</li> <li>• 위원회 리스크는 물론 권리보유자(HR holders)의 리스크를 동시에 다룸</li> <li>•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li> <li>•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li> </ul>
주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절차와 결과의 정당성, 신뢰성 확보(이해관계자 참여)</li> <li>• 평등과 비차별 원칙</li> <li>• 접근성과 투명성</li> <li>• 책무성(피해자 구제절차와 연계)</li> <li>• 포괄성(모든 인권을 고려)</li> <li>• 정책 피드백의 효율성(위원회의 참여)</li> <li>•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참여)</li> </ul>

### 제3절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 1. 인권영향평가 실행체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2019년 시행으로 금년은 제외함(2021~2022 사이 추진 예정)

## 2.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활용방안

<p><b>1단계</b> 준비 (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 결정(정책혁신부 + 한국표준협회)</li> <li>•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확정</li> <li>• 2020년 인권영향평가 착수논의(평가 범위와 방법, 추진일정)</li> <li>• 인권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li> </ul>
<p><b>2단계</b> 사전조사 (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개발</li> <li>•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문학지원사업, 예술극장운영사업)</li> <li>•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보완</li> <li>• 1차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사업 담당자 대상 인권영향평가 이해 제공</li> <li>- 사업별 체크리스트 교육 및 예비평가 방법 안내</li> </ul> </li> <li>• 1차 평가 착수(주요사업 관련 내부 규정 및 문서를 대상으로 내부 전문가 수행)</li> </ul>
<p><b>3단계</b> 착수 (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평가 착수(내부 전문가 평가결과 검증 및 개선·보완)</li> <li>•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평가대상 사업별 정책수요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창작자 및 공연 예술가</li> </ul> </li> <li>• 인권영향평가 실무 워크숍(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교육, 인권영향평가 중간 보고 및 위원회 피드백 수렴)</li> <li>•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완</li> </ul>
<p><b>4단계</b> 결과적용 및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악된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 조치 마련</li> <li>• 인권침해가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시행</li> <li>•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및 보완</li> </ul>
<p><b>5단계</b>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조치 실행 성과 모니터링</li> <li>• 실행 성과 결과 보고</li> <li>•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li> </ul>

## 제4절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 1. 사전 정보

#### □ 용어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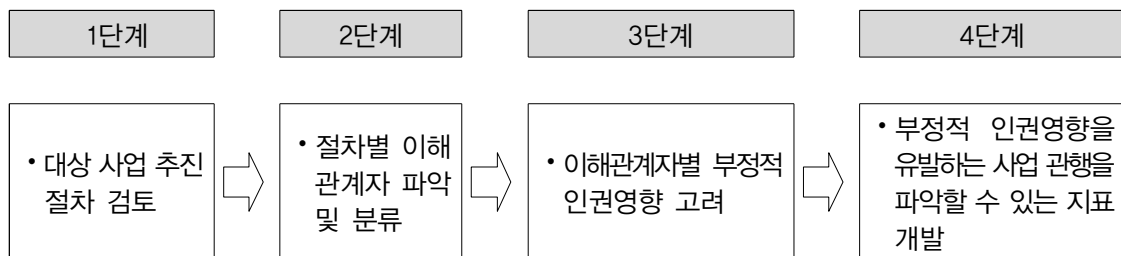
분야	항목	지표
• 평가대상 사업 분야	• 세부사업 • 사업절차 또는 인권 이슈	• 세부사업 또는 인권이슈 항목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원회 조치 실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

#### □ 답변 판단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예(Yes)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 필요 (Further attention required)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일부 진전 정도에 대한 진단과 향후 보완계획 수립 필요)
아니오(No)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경우(향후 추진계획 필요)
정보 없음 (No Info)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의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정보 수집체계 구축 필요)
해당 없음 (Not applicable)	•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이 위원회 사업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 체크리스트 도출



## □ 문학지원사업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항목	지표수
1	공통	8
2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11
3	문예지 발간지원	11
4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8
5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6
합계	5	44

## □ 예술극장운영사업 체크리스트 개요

연번	항목	지표수
1	대관	5
2	예술공연	5
3	접근성	5
4	안전보건	6
합계	4	21

## 제3장

---

### 문학지원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제1절 평가 종합

1. 총평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제2절 항목별 평가

1. 공통
2.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3. 문예지 발간지원
4.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5.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 제절 평가 종합

### 1. 총평

구분	세부내용
사업분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lt;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 UNGPs&gt;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권준중 책임 이행을 위한 인권실사 및 실천 점검 의무 (Due diligence)를 문학지원사업 분야 실행 절차에 통합하는 과정에 있음</li> <li>• 문학지원사업 분야 관련 내부 규정과 관행은 사업실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조치를 포괄하고 있음</li> <li>• 전체 44개 지표 중 '해당없음'을 제외한 40개 지표에 대한 충족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는 예(80%), 보완 필요(12.5%), 정보 없음(5%), 아니요(2.5%)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88.9점으로 문학지원사업 분야 실행 과정에서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 및 관행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li> <li>•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사업과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사업, 아르코 창작기금 사업은 인권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수준이 안정단계에 접어든 반면, 문예지 발간지원 사업은 위원회 인권정책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및 관행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li> <li>• 특히, 해당사업 분야 모든 사업에서 인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담당자 실무교육 내용을 개선해 위원회 인권정책을 사업관행에 통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임</li> </ul>
개별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구제절차 제공,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와 관행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업담당자의 노동 환경, 사업 참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어 일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li> <li>•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알권리 보호와 정보접근성 보장,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관행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사업담당자 및 사업 참여자가 문학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에 통합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제공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li> <li>• 문예지 발간지원 사업은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문예지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문예지 대상 문학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문예지 선정절차에 인권을 고려하는 관행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li> <li>•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사업 또한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수행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행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li> <li>•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알권리 보호와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관행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부정적 인권영향은 파악되지 않았음</li> </ul>

##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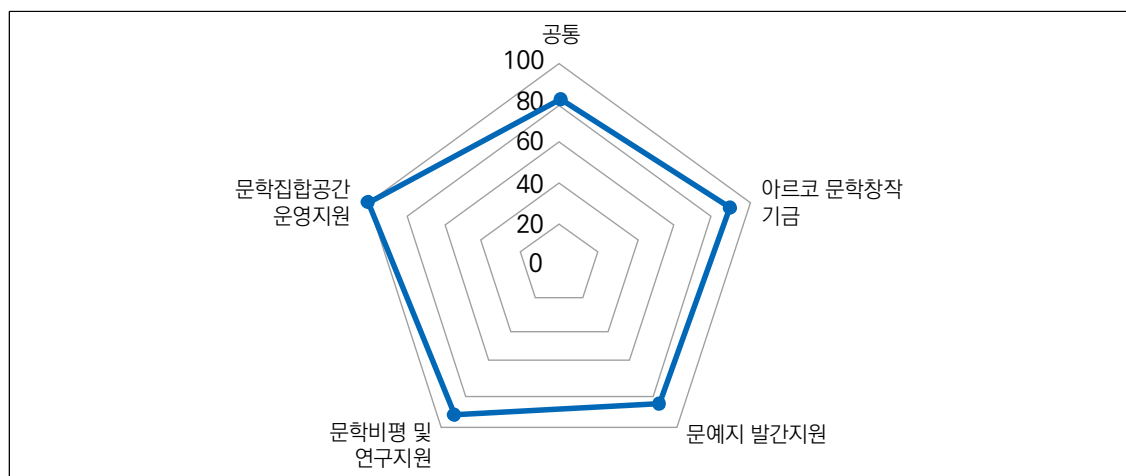
### □ 평가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통	6	1	1		
2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5	2			4
3	문예지 발간지원	8	2	1		
4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7			1	
5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6				
합 계		32	5	2	1	4

### □ 환산점수

No.	항 목	점수	비고
1	공통	82.5	
2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88.6	
3	문예지 발간지원	83.6	
4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90	
5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100	
평 점		88.9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항목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없음 1점·아니요 0점)
- ※ 항목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5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times 100$
- ※ 해당 없음에 대한 항목은 제외함



## 제2절 항목별 평가

### 1. 공통

#### □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과정에 대한 신청단체의 이의제기와 정보공개 청구 및 해당 심의위원의 의견 조화가 가능하도록 &lt;지원심의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gt;을 마련 및 시행하고 이를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에 안내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 발생 시 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적용</li> <li>• 관계법령 및 내부 &lt;개인정보처리방침&gt;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직무특화교육 과정 및 지원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에 저작권 보호 이슈와 함께 반영</li> </ul>

####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통	6	1	1		
합 계		6	1	1		

No.	분 야	점수
1	공통	82.5
평 점		82.5



#### □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구제절차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지원사업 분야 사업담당자 대상 기관 인권침해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사업실행과정에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치</li> </ul>
노동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지원사업 정책수요자에 의한 사업담당자 괴롭힘 발생 시, 보호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lt;국제노동기구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 협약&gt;을 참고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적용범위 확대</li> <li>•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 가해자와 분리조치(근무지 변경), 법률지원, 치유·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li> </ul>

구 분	세 부 내 용
지식재산권 보호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조치를 반영해 위원회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개선 및 보완하고, 문학지원사업 선정자 또는 선정기관과 맺는 협약서에 이를 반영
표현의 자유보장	• 작·간접적으로 문예위 문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 명시(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규정, 사업지침서 등)

## 2.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 □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자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사업담당자 직무특화 교육에 반영하고 있음</li> <li>• 해당 사업관련 정보를 누리집 공고문, 문예기금 공모사업 설명 자료 등에 상세하게 제공하고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웹접근성 인증 취득 및 2020년 시행한 2021년 사업설명회에서 수어설명 제공</li> <li>• &lt;지원심의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gt;, &lt;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gt;, &lt;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gt;, &lt;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gt;, 심의위원 대상 &lt;공정심의서약서&gt; 징구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li> </ul>

###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5	2			
합 계		5	2			

No.	분 야	점수	
2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88.6	
평 점		88.6	

□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실무자 인권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진흥기금 전체 사업담당자 직무교육에 문학창작자의 권리(저작권, 사생활 보장, 표현의 자유, 계약절차 방법 등에 있어 법적 보호 장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사업절차에 인권 통합</li> </ul>
출판사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창작자 대상 문학창작자의 권리(저작권, 표현의 자유, 계약절차 방법 등에 있어 법적 보호 장치 등)에 대한 정보 안내 또는 교육 제공</li> <li>• 선정된 창작자가 출판한 경우, 사후라도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창작자가 해당 지표관련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수행</li> <li>• 선정된 창작자가 출판한 경우, 해당 출판사 정보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위원회는 출판사와 협의해 출판비용 등에 대한 일부 지원과 더불어 창작자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절차를 보완해 출판사의 문학창작자 인권존중 유도</li> </ul>
정보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접근성 인증을 취득한 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 수시 보완 및 정기적인 갱신 필요</li> </ul>
표현의 자유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간접적으로 문예위 문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 명시(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규정, 사업지침서 등)</li> </ul>

3. 문예지 발간지원

□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문예지 발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담당자의 저작권, 개인정보 등 관련 교육 및 반부패청렴 교육(행동강령 및 신고절차, 캠페인, ARKO 청렴한 노트 배부 등) 이수 의무화</li> <li>• 원고청탁계약서 양식에 원고청탁 형식과 내용, 원고료의 지급방법, 작가의 저작권 존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후평가 및 정산 단계에서 이행을 확인함으로써, 문예지에 의한 문학창작자 인권침해 예방</li> <li>• 해당 사업관련 정보를 누리집 공고문, 문예기금 공모사업 설명 자료 등에 상세하게 제공하고, &lt;지원심의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gt;, &lt;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gt;, &lt;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gt;, &lt;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gt;, 심의위원 대상 &lt;공정심의서약서&gt; 징구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li> </ul>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문예지 발간지원	8	2	1		
합 계		8	2	1		

No.	분 야	점수	
3	문예지 발간지원	83.6	
평 점		83.6	

□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실무자 인권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진흥기금 전체 사업담당자 직무교육에 문학창작자의 권리(저작권, 사생활 보장, 표현의 자유, 계약절차 방법 등에 있어 법적 보호 장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사업절차에 인권 통합</li> </ul>
인권정책 일관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 중지를 명시하고 있는 인권경영규정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를 해당사업에 통합</li> <li>• 해당사업의 사후 평가 항목에 포함된 문서화된 서면계약서(원고 청탁 계약서) 확인, 원고료 적정지급,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문학창작자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완 및 환수 조치 외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시행</li> </ul>
문예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문서화된 서면계약서(원고 청탁 계약서) 확인, 원고료 적정지급,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문학창작자 권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문예지 대상 제공</li> </ul>

## 4.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 □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담당자의 반부패청렴 교육(행동강령 및 신고절차, 캠페인, ARKO 청렴한 노트 배부 등) 이수 의무화</li> <li>• 해당 사업관련 정보를 누리집 공고문, 문예기금 공모사업 설명 자료 등에 상세하게 제공하고, &lt;지원심의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gt;, &lt;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gt;, &lt;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gt;, &lt;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gt;, 심의위원 대상 &lt;공정심의서약서&gt; 징구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li> <li>• 연구수행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추진일정 및 보고일시 결정 관행 구축</li> </ul>

###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7				
합 계		7				

No.	분 야	점수	
4	문학비평 및 연구지원	90	
평 점		90	

### □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인권정책 일관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 중지를 명시하고 있는 인권경영 규정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를 해당사업에 통합</li> </ul>

## 5.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 □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문학 집필공간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담당자의 반부패청렴 교육(행동강령 및 신고절차, 캠페인, ARKO 청렴한 노트 배부 등) 이수 의무화하고 선정기관이 공간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문학창작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연중 현장 모니터링 시행</li> <li>• 해당 사업관련 정보를 누리집 공고문, 문예기금 공모사업 설명 자료 등에 상세하게 제공하고, &lt;지원심의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gt;, &lt;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gt;, &lt;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gt;, &lt;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gt;, 심의위원 대상 &lt;공정심의서약서&gt; 징구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li> <li>• 해당 공간별 코로나 방역지침 안내 자료 배포 및 시설 운영 지침 준수 요구</li> </ul>

###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5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6				
합 계		6				

No.	분 야	점수	
5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100	
평 점		100	

### □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

## 제4장

---

### 예술극장운영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제1절 평가 종합

1. 총평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제2절 항목별 평가

1. 대관
2. 예술 공연
3. 접근성
4. 안전·보건

## 제절 평가 종합

## 1. 총평

구분	세부내용
분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lt;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 UNGPs&gt;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위한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Due diligence)를 예술극장 운영사업 실행 절차에 통합하고 있음</li> <li>• 예술극장 운영사업 관련 내부 규정과 관행은 사업실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조치를 포괄하고 있음</li> <li>• 전체 21개 지표에 대한 충족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는 예(85.7%), 보완 필요(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94점으로 예술극장 운영사업 실행 과정에서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 및 관행이 안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li> <li>• 대관, 예술 공연 절차 및 안전보장 항목은 모든 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인권영향은 파악되지 않은 반면, 접근성 항목에서 일부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li> </ul>
항목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관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대관 신청자 차별, 대관 변경 및 취소·환불 절차에서의 고충처리 미흡, 대관자의 알권리 침해, 사생활 침해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대관 관행의 부정적 인권영향은 파악되지 않았음</li> <li>• 공연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공연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객 안전권 침해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공연 과정의 부정적 인권영향 또한 파악되지 않았음</li> <li>• 극장 시설 및 공연정보에 대한 공연출연자 또는 관객의 접근성 보장 조치를 평가한 결과 심각하고 실재하는 부정적 영향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출연자의 극장 시설 접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 및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음</li> <li>• 안전보건 이슈를 재난대응, COVID-19 대응, 안전 및 위생조치 관점에서 접근해 평가한 결과 부정적 인권영향은 파악되지 않았음</li> </ul>

## 2.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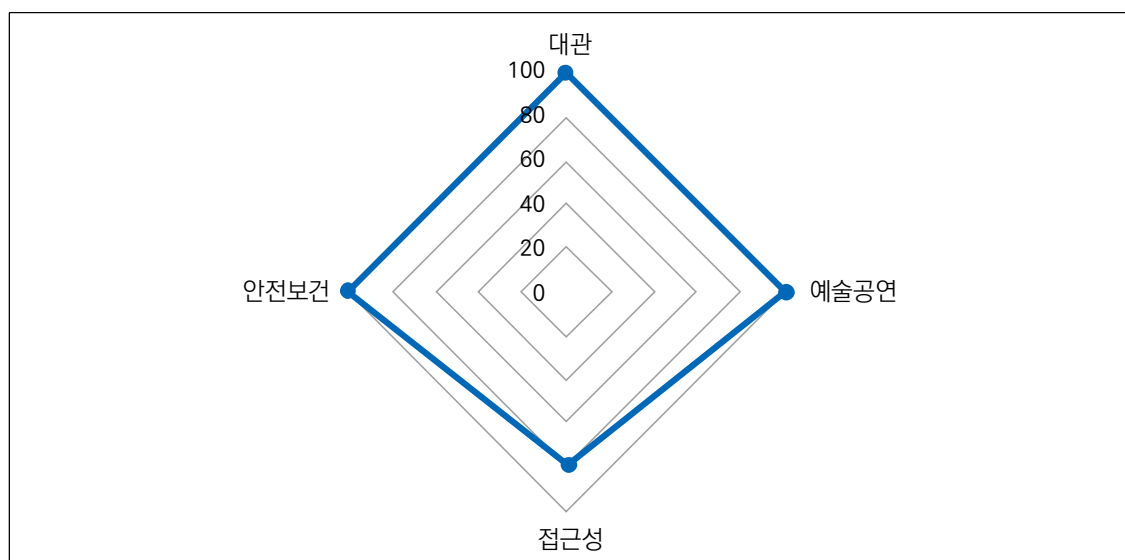
### □ 평가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대관	5				
2	공연	5				
3	접근성	2	3			
4	안전·보건	6				
합 계		18	3			

### □ 환산점수

No.	분 야	점수	비고
1	대관	100	
2	공연	100	
3	접근성	76	
4	안전·보건	100	
평 점		94	

- 인권영향평가 평가 점수: 항목별 점수의 평균값(예 5점·보완필요 3점·정보없음 1점·아니요 0점)
- ※ 항목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5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 100$
- ※ 해당 없음에 대한 항목은 제외함



## 제2절 항목별 평가

### 1. 대관

#### □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공연장 운영규정&gt; 제9조(대관심의위원회)에 따라 외부위원이 과반 참여로 대관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문 예술 공연장 취지와 맞지 않는 종교 및 정치 목적, 개인 기업체 등의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외 대관신청과 이용에 제약은 없음</li> <li>• 대관단체와의 소통채널(모니터링, 기획회의, 간담회 등)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고충을 파악하고 &lt;공연장 운영규정&gt;, &lt;공연장 공연 운영지침&gt;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개선 시행</li> <li>• 대관 이용자 대상 설명회, 「공연단체를 위한 아르코대학교로예술극장 이용 안내서」 제작배포, &lt;극장 누리집&gt; 공지, 계약서, 공연별 기획회의를 통해 극장 이용관련 세부정보 제공</li> <li>• 관계법령 및 내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담당자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li> </ul>

####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대관	5				
합 계		5				

No.	분 야	점수	
1	대관	100	
평 점		100	

#### □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 공연 횟수 제한을 통해, 연중 진행되는 공연으로 인한 극장 노동환경 및 공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침해 예방</li> <li>- 공연자의 안전과 건강권 침해 예방</li> </ul> </li> </ul>

## 2. 공연

### □ 성과

구분	세부내용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연장 시설물과 관객의 안전, 정신적 충격 등 관람객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공연물에 대한 정보 제공 시 트리거 워닝(trigger warning) 표시를 통해 공연자의 표현의 자유 및 관람객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li> <li>• &lt;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기획공연 작가계약서&gt;, &lt;공연장 공연 운영지침&gt;에 공연 제작자 등 창작자의 저작물 침해 예방, 사용 및 보상 관련 기준과 절차는 물론 공연자에 의한 타인의 저작물 침해 예방조치 마련</li> </ul>

###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공연	5				
합계		5				

No.	분야	점수	
2	공연	100	
평점		100	

### □ 개선 및 발전의 여지

-
---

### 3. 접근성

#### □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2020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정보접근 및 이동약자를 위한 개선공사 시행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시설 및 재난대응 정보접근성 개선(점자표지판 및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점자피난안내도)</li> <li>•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객과 조력자를 위한 최적 관람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약자 출연자의 무대 및 대기실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출입문 폭 확대, 엘리베이터 설치 등)</li> <li>• 예매 시 장애인할인으로 예매한 관객의 경우 티켓 배부 시부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 후 하우스매니저 또는 관객안내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lt;장애인 관객 응대 교육&gt; 진행</li> <li>• 2021년부터 배리어프리(BF) 공연이 있을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어, 자막해설, 음성해설 등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공간구성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을 위한 논의 진행 중</li> </ul>

####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접근성	2	3			
합 계		2	3			

No.	분 야	점수	0	20	40	60	80	100
3	접근성	76						
평 점		76						

#### □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정보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켓예매(좌석 선택, 결제진행) 페이지의 웹접근성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 후 갱신 시점 및 웹사이트 변경 시에 수시 보완을 통해 정보제공 누락 방지</li> <li>• 공연관람에 편의제공이 필요한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해, 배리어 프리(BF) 공연을 선정(또는 쿼터제 도입) 및 제공하고, 관련 편의제공 점진적 확대</li> </ul>
시설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휠체어의 이동 및 회전반경을 고려해 분장실 등 출입구 폭을 확대하고 출입구와 인접한 내부 시설물 배치를 변경하는 등 공연자의 시설 접근성 개선 노력 지속</li> </ul>

## 4. 안전 · 보건

### □ 성과

구 분	세 부 내 용
안전 ·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피매뉴얼에 따라 관객서비스인력 대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검토를 통해 관객안내원 인력 배치 증원, 관객 안전 비상상황 발생 시 휴식 및 안정 취할 수 있는 독립 공간 ‘관객안전실’ 조성 등 안전조치 강화</li> <li>• 관객안내원 출입카드 개인지급으로 외부인 식별 및 보안 관리 강화</li> <li>• &lt;공연장 운영규정&gt;, &lt;공연장 공연 운영지침&gt;에 공연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공연장 시설물과 관객의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음</li> <li>• 극장 환기 및 소독 매뉴얼을 마련·시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관객, 노동자, 시설이용자 대상)</li> </ul>

###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No.	항 목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	안전·보건	6				
합 계		6				

No.	분 야	점수	
4	안전·보건	100	
평 점		100	

### □ 개선 및 발전의 여지

구 분	세 부 내 용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극장 환기 및 소독 매뉴얼&gt; 준수 강화를 통해, 공연장 먼지로 인한 출연자, 관객, 근로자 건강관련 부정적인 영향 예방·완화</li> </ul>

## 제5장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 제안

제1절 전략 체계

제2절 2021-2023 중점 추진 과제

### 제1절 전략 체계

인권경영 비전	차별 없이 국민과 직원을 존중하고 섬기는 ARKO			
추진단계	안정기 (2021)	확산기 (2022-2023)	선도기 (2024-2025)	
추진목표	인권실사 시스템 완성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경영 리더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실천력 강화</li> <li>• 인권경영 이행성과 정보 수집 체계화 및 공개 시스템 확립</li> <li>• 인권침해 구제절차 실효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정책 개발 확산</li> <li>• 지역기반 인권클러스터 구축</li> <li>• 광역문화재단 네트워크 인권클러스터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운영 및 사업 관행에 인권존중 문화 완전한 통합</li> <li>• 지역사회 및 업계 인권존중 클러스터 선도</li> <li>• 인권경영 모범사례 전파</li> </ul>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이슈 파악  •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정례적 시행	분석 및 진단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 분석 • 인권침해신고 이슈 분석 • 관련 법 제도 내부규정 이행환경 분석	환류  • 정책 환류(인권경영시스템 개선) • 인권실태조사/인권영향평가 지표 반영 • 임직원 및 정책수요자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콘텐츠 반영	

제2절 2021-2023 중점 추진 과제

1. 우선순위 선정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인권 영향의 파급성	심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적 인권영향으로 인한 피해 정도</li> </ul>
	회복 불가능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 등 구제를 통한 피해 원상회복 불가능 정도</li> <li>피해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력 범위 내 위치한 이해관계자 수 또는 지역적 범위</li> </ul>

2. 중점 추진과제

구분	목적	과제	시급도*	협력부서**
문화지원사업 (공통)	사업 담당자 인권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업 분야 모든 사업에서 인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담당자 직무교육 내용을 개선해 위원회 인권정책을 사업관행에 통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침해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사업실행과정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배양</li> <li>⇒ 문예진흥기금 전체 사업담당자 직무교육에 문학창작자의 권리(저작권, 사생활 보장, 표현의 자유, 계약절차 방법 등에 있어 법적 보호 장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사업절차에 인권 통합</li> </ul> </li> </ul>	●	인재 성장부
	노동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지원사업 정책수요자에 의한 사업담당자 괴롭힘 발생 시, 보호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lt;국제노동기구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 협약&gt;을 참고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적용범위 확대</li> </ul>	●	감사실, 인재 성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 기해자와 분리조치(근무지 변경), 법률지원, 법률지원, 치유·상담프로그램 제공 등</li> </ul>		
	지식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조치를 반영해 위원회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개선 및 보완</li> <li>• 문학지원사업 선정자 또는 선정기관과 맺는 협약서에 문예위의 문학창작자 지식재산권 존중 의무, 문학창작자의 타인 지식재산권 존중 의무 명시</li> </ul>	●	
	표현의 자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지침서 등에 직·간접적으로 문예위 문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 의무 명시</li> </ul>	●	
	정보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접근성 인증을 취득한 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 수시 보완 및 정기적인 갱신 필요</li> </ul>	●	재무 관리부
문학지원사업 (이르코 문학창작 기금)	출판사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창작자 대상 문학창작자의 권리(저작권, 표현의 자유, 계약절차 방법 등에 있어 법적 보호 장치 등)에 대한 정보 안내 또는 교육 제공</li> </ul>	●	
문학지원사업 (문예지 발간지원)	사업관행의 인권정책과의 일관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 중지를 명시하고 있는 인권경영규정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를 해당사업에 통합</li> <li>• 해당사업의 사후 평가 항목에 포함된 문서화된 서면계약서(원고 청탁 계약서) 확인, 원고료 적정지급,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문학창작자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완 및 환수 조치 외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시행</li> </ul>	●	
	문예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문서화된 서면계약서(원고 청탁 계약서) 확인, 원고료 적정지급,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문학창작자 권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문예지 대상 제공</li> </ul>	●	

<p>문화지원사업 (문화비평 및 연구지원)</p>	<p>사업관행의 인권정책과의 일관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 중지를 명시하고 있는 인권경영규정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를 문화지원사업 실행 절차에 통합</li> </ul>	<p>●</p>
<p>예술극장 운영사업 (대관)</p>	<p>노동환경 및 공연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간 공연 횟수 제한을 통해, 연중 진행되는 공연으로 인한 극장 노동환경 및 공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침해 예방</li> <li>- 공연자의 안전과 건강권 침해 예방</li> </ul> </li> <li>• &lt;극장 환기 및 소독 매뉴얼&gt; 준수 강화를 통해, 공연장 먼지로 인한 출연자, 관객, 근로자 건강관련 부정적인 영향 예방·완화</li> </ul>	<p>●</p>
<p>예술극장 운영사업 (접근성)</p>	<p>정보접근성 보장</p> <p>시설접근성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켓예매(좌석 선택, 결제진행) 페이지의 웹접근성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 후 갱신 시점 및 웹사이트 변경 시에 수시 보완을 통해 정보제공 누락 방지</li> <li>• 공연관람에 편의제공이 필요한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해, 베리어프리(BF) 공연을 선정(또는 쿼티제 도입) 및 제공하고, 관련 편의제공 점진적 확대</li> <li>• 전통휠체어의 이동 및 회전반경을 고려해 분장실 등 출입구 폭을 확대하고 출입구와 인접한 내부 시설물 배치를 변경하는 등 공연자의 시설 접근성 개선 노력 지속</li> </ul>	<p>●</p> <p>●</p>

\* ●(2021년), ○(2023년), ○(2025년)

\*\* 전사적인 추진이나 타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를 함께 명기함

## 부록

---

### 평가 세부결과

## 1. 문화지원사업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공통	1	정채수요자가 기회균등을 침해당하거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 절차 또는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심의옵무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시행(해당 사업은 옵무즈만 신청 대상으로 심의과정에 대한 신청단계의 이의제기와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심의위원의 의견조회 가능)</li> <li>• 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적용</li> </ul>
	2	사업 설명회 등 사업정보 제공 시,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사전 안내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에 옵무즈만제도 안내(제도 및 처리절차 등 상세정보 제공)</li> </ul>
	3	구제절차 또는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확인 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을 보장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용지침 적용</li> <li>• 사업담당자 대상 기관 인권침해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사업실행과정에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치</li> </ul>
	4	사업 추진 절차에서 정채수요자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과 내부방침에 따라 보호 처리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 및 내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수립, 처리, 관리</li> </ul>
	5	사업 추진 절차에서 사업담당자가 정채수요자에 의한 괴롭힘 피해를 입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반영해 준수환경 강화</li> <li>• 해당 지침의 적용범위를 사업 참여자 등 정채수요자를 포괄해 외부이해관계자에 의한 괴롭힘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와 분리조치(근무지 변경), 법률지원, 치유 상담프로그램 제공 등</li> </ul> </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6	사업참여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특화교육 과정에 포함</li> <li>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조치를 반영해 위원회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개선했고, 선정자 또는 선정 기관과 맺는 협약서에 이를 반영</li> </ul>
	7	선정기관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저작권 관련 교육 실시(보호 대상 확인 필요, 위원회 저작권보호정책 내용이라면 평가 변경)</li> </ul>
	8	사업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간접적으로 문예위 문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 명시(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규정, 사업지침서 등)</li> </ul>
소 계		6	1	1			
아르코 문학 창장 기금	1	사업담당자의 직무훈련 과정에 문학창작자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작권, 개인정보 등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li> <li>사업담당자 직무교육에 문학창작자의 권리(저작권, 생활 보장, 표현의 자유, 계약절차 방법 등에 있어 법적 보호 장치 등에 대한 교육 시행-문예진흥기금사업 전반으로 접근 필요)</li> </ul>
	2	선정된 문학창작자가 작품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출판관련 사업 참여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또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가 출판사를 지정 운영하지 않아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li> <li>선정된 창작자 대상 문학창작자의 권리(저작권, 표현의 자유, 계약절차 방법 등에 있어 법적 보호 장치 등)에 대한 정보 안내 또는 교육 제공</li> </ul>
	3	출판관련 사업 참여자가 문학창작자의 작품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출판권 설정계약서 체결을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된 창작자가 출판을 한 경우, 사후라도 출판사와의</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	출판관련 사업 참여자가 인쇄와 판매량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	관계에서 창작자가 해당 지표관련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선정된 창작자가 출판할 한 경우, 해당 출판사 정보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위원회는 출판사와 협의해 출판비용 등에 대한 일부 지원과 더불어 창작자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 절차를 보완해 출판사의 문학창작자 인권존중 유도 고려
5	출판관련 사업 참여자가 문학창작자의 작품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2차 저작권과 전송권에 관한 내용을 출판권설정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도록 장려한다.					√	
6	공모단계에서 정채수요자 대상 신청자격, 사업절차 및 내용, 심사기준 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문예기금 공모사업 설명 자료에 포함
7	공모요강에 대한 시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					• 사업정보 및 공고, 설명회 자료를 제공하는 누리집의 웹접근성 인증 취득 • 2021년 사업설명회 수어설명 제공 • 웹접근성 인증을 취득한 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 수시 보완 및 정기적인 갱신 필요
8	사업 추진절차와 무관하게 초기단계에서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한 정채수요자의 사업 참여를 제약하지 않도록 지원신청서를 단계적으로 접수한다.	√					• 2021년 공모사업부터 전면 개선하여 기존 4개 필수 제출 서류를 2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 관련 서류 요구
9	단계별 심사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해 문학창작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					• 지원심의음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시행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li> <li>• 심의위원 대상 공정심의서약서 징구</li> <li>• 심의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년 공모사업부터 1차와 2차로 심의결과를 단계별로 발표</li> </ul>
10	창작기금 심의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가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 위촉시 공정심의서약서 안내(위반시 심의참여 제한 등 조치)</li> </ul>
11	사업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간접적으로 문예위 문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 명시(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규정, 사업지침서 등)</li> </ul>
소 계		5	2		4	
문예지 발간 지원	1	사업담당자의 직무관련 과정에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운영 관행 금지, 문학창작자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청렴 교육 정기적 시행(행동강령 및 신고절차, 캠페인, ARKO 청렴한 노트 배부 등)</li> <li>• 저작권, 개인정보 등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li> <li>• 사업담당자 직무교육에 문학창작자의 권리(저작권, 생활 보장, 표현의 자유, 계약절차 방법 등에 있어 법적 보호 장치 등)에 대한 교육 시행-문예진흥기금사업 전반으로 접근 필요</li> </ul>
	2	선정된 정책수요자가 문예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문학창작자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예방교육 또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청탁계약서 양식에 원고청탁 형식과 내용, 원고료의 지급방법, 작가의 저작권 존중 등에 관한 사항 포함</li> <li>• 사후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문서화된 원고청탁서 확인, 원고료 적정지급,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문학창작자 권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문예지 대상 제공</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공모단계에서 정책수요자 대상 신청자격, 사업 절차 및 내용, 심사기준 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설명(<a href="https://www.arko.or.kr/content/5209">https://www.arko.or.kr/content/5209</a>)</li> </ul>
4	문예지 원고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이력이 있는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이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단체)과의 거래 중지를 명시하고 있는 인권경영규정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를 해당사업에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업의 사후 평가 항목에 포함된 문서화된 원고 청탁서 확인, 원고료 적정지급,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문학창작자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완 및 환수 조치 외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시행</li> </ul> </li> </ul>
5	단계별 심사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해 정책 수요기관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심의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시행</li> <li>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li> <li>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li> <li>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li> <li>심의위원 대상 공정심의서약서 징구</li> </ul>
6	지원 심의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예방하는 장치가 있다.	√					
7	모니터링 또는 사업 평가단계에서 문학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원고 청탁서 제공 사실을 확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청탁계약서 양식에 원고청탁 형식과 내용, 계약기간, 원고료의 지급방법, 작가의 저작권 존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후평가 및 정산 단계에서 서면계약서 이행 확인</li> </ul>
8	모니터링 또는 사업 평가단계에서 원고청탁 시 충분한 원고 집필 기권을 제공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9	모니터링 또는 사업 평가단계에서 원고청탁서에	√					
	원고로, 원고로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10	모니터링 또는 사업 평가단계에서 원고료를 다른	√					
	물건으로 제공하거나 기금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지						
11	확인한다.						
	신청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문학창작자의 표현의	√					
	자유를 제약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미련하고 있다.						
	소 계	8	2	1			
문학 비평 및 연구 지원	사업담당자의 직무관련 과정에 지배적 지위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청렴 교육 정기적 시행(행동강령 및 신고절차, 캠페인, ARKO 청렴한 노트 배부 등)</li> <li>• 협력기관(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 기관(단체)과의 거래 중지를 명시하고 있는 인권경영규정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관리)를 해당사업에 통합</li> <li>• 문예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설명자료 내 자격, 절차, 지원내용, 심사기준 등 명시)</li> <li>• 지원심의음부조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시행</li> </ul>
	이용한 불공정 운영 관행 금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				√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정된 정책수요자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2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예방교육 또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3	공모단계에서 정책수요자 대상 신청자격, 사업절차	√					
및 내용, 심사기준 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단계별 심사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해 정책	√					
수요기관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li> <li>•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li> <li>•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li> <li>• 심의위원 대상 공정심의서약서 징구</li> <li>• 심의위원 위촉시 공정심의서약서 안내(위반시 심의참여 제한 등 조치)</li> <li>• e나라도움 집행정산 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 전수 검토</li> </ul>
	5 선정 심의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예방하는 장치가 있다.	✓					
	6 모니터링 또는 사업 평가단계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					
	7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업추진 경과 또는 내용에 대해 방문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					
	8 중간보고 또는 최종결과보고 일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추진일정 및 보고 일시 결정 관행 구축</li> </ul>
	소 계	7			1		
문학 집필 공간 운영 지원	1 사업담당자의 직무관련 과정에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운영 관행 금지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청렴 교육 정기적 시행(행동강령 및 신고절차, 캠페인, ARKO 청렴한 노트 배부 등)</li> </ul>
	2 선정된 정책수요자가 공간지원 또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문학창작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 시행</li> </ul>
	3 문학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의 COVID-19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준수를 요구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공간별 코로나 방역지침 안내 자료 배포 및 시설 운영 지침 준수 요구</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	공모단계에서 정책수요자 대상 신청자격, 사업 절차 및 내용, 심사기준 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문예기금 공모사업 설명자료(설명자료 내 자격, 절차, 지원내용, 심사기준 등 명시)
5	단계별 심사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해 정책 수요기관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심의움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및 시행</li> <li>•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li> <li>•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li> <li>•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li> <li>• 심의위원 대상 공정심의서약서 징구</li> <li>• 서류심사 및 공개PT심사 진행(신청단계 모두 공개 참관)</li> </ul>
6	지원 심의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예방하는 장치가 있다.	√					• 심의위원 위촉시 공정심의서약서 안내(위반시 심의참여 제한 등 조치)
소 계		6					
합 계		32	5	2	1	4	

## 2. 예술극장 운영 사업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대관	1 대관절차는 투명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차별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관절차는 &lt;공연장 운영규정&gt;을 통해 명문화하고, &lt;극장 누리집&gt; 및 &lt;대관 설명회&gt;를 통하여 안내함</li> <li>• 외부위원이 과반 참여로 대관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공연장 운영규정 제9조-대관심의회)</li> <li>• 관계법령 위임 없이 대관사용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 제한규정 최소화. 단, 지원기구로서 지원 사업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 시행 중이며, 전문 예술 공연장으로 종교 및 정치 목적, 개인 기업체 등의 행사 등에 대한 일부 제한은 유지(제8조 -대관신청의 제한)</li> </ul>
	2 대관 변경, 취소 및 환불 절차 등에 대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 개선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장과 대관단체 상호 협력 모니터링(연중), 공연별 기획회의(최소 1회), 대관단체 간담회(연중)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li> <li>• &lt;공연장 운영규정&gt;, &lt;공연장 공연 운영지침&gt;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 대관자 이용 편의성을 제고(20.3월, 11월/두 차례 개정 성과)</li> </ul>
	3 부대시설 이용, 티켓시스템 이용, 홍보 수수료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관 이용자 대상 설명회 개최, 「공연단체를 위한 아코너대항로 예술극장 이용 안내서, 제작배포, &lt;극장 누리집&gt;에 관련 사항 공지, 계약서에 관련 세부사항 포함, 대관 공연별 기획회의를 통해 안내</li> </ul>
	4 대관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관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이수</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처리를 위한 내부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수집사항 사전 고지, 개인정보 관련 문서 암호화 등 조치</li> </ul>
5	COVID-19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 예술극장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해 확보된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에 제공하더라도 그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문진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하며, 수집 이용기간(4주)이 지나면 파기</li> </ul>
소 계						
		5				
공연	1 공연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시설물과 관객의 안전, 심적 충격 등 관람객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및 안전 관리에 관한 협의를 진행 할 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li> <li>• 사전협의 과정에서 내용의 조정을 최소화하고 공연물에 대한 정보 제공 시 트리거워닝(trigger warning) 표시를 통해 공연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안전 관리(공연단체와 협의 후 티켓 판매 안내페이지에 해당 내용 사전 고지요청 및 매표소와 극장 로비에 관련 안내문 게재, 관객 입장 시 미성년 관람객 또는 임신부 등 배려가 필요한 관객 대상으로 별도 구두 안내 진행)</li> </ul>
	2 공연물의 대본 등에 대한 사전검열을 통해 변경을 요구하거나 대관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대본은 대관신청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며, 대관자가 희망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를 대관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음</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미성년 관람객 보호 또는 혐오표현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공연제작자가 사전에 해당 장면을 고지하도록 장려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물에 대한 정보 제공 시 트리거워닝(trigger warning) 표시를 통해 공연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안전 관리(공연단체와 협의 후 티켓 판매 안내페이지에 해당 내용 사전 고지요청 및 대표사와 극장 로비에 관련 안내문 게재, 관객 입장 시 미성년 관람객 또는 임신부 등 배려가 필요한 관객 대상으로 별도 구두안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전 스텝회의에서 1차 확인</li> <li>- '공연진행 정보(하우스 운영)'파일 내'무대 및 객석 특이사항' 작성 요청하여 2차 확인</li> <li>- 최종 리허설 시 극장관계자(하우스매니저) 임회하여 3차 확인</li> </ul> </li> <li>• 공연제작자 등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존중 및 사용, 보상 관련 기준과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기획공연 작가계약서 제5조, 제7조, 제8조</li> <li>-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제4조, 제5조</li> </ul> </li> <li>• 공연자에 의한 타인의 저작물 침해 예방조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제5조 5항</li> </ul> </li> <li>• 공연제작자 등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존중 및 사용, 보상 관련 기준과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제5조 4항에 대관자의 저작권적 권리 인정을 명시함</li> <li>-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제5조 6항에 공연의 촬영, 녹화, 방영권은 대관자(=공연단체)에게 귀속됨을 명시함</li> </ul> </li> </ul>
4	공연제작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5	예술극장 홍보 목적으로 공연물의 사진 또는 영상 일부를 사용할 때는 제작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소 계		5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예술극장 웹사이트 및 모바일 버전에 시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켓에(좌석 선택, 결제진행) 페이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 제공이 어려워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2021년 웹사이트 개편 시 웹접근성 검사항목 점검 및 개선 조치 후 오픈 예정</li> <li>• 웹접근성 인증 후 갱신 시점 및 웹사이트 변경 시 수시 보완함으로써 정보제공 누락 방지 조치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관객의 공연장 등 시설접근성 증진을 위한 개선공사 시행(2018-2020)</li> </ul>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로예술극장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2020.11.)</li> <li>• 대학로예술극장 휠체어 진입로 넓이 확충공사(2020.11.)</li> <li>•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여자 장애인 화장실 재설치</li> <li>• 아르코예술극장 주출입구 휠체어 출입 경사로 노면 평탄화</li> <li>• 아르코예술극장 보조 안전 난간 설치</li> <li>• 점자안내도/승강기 및 운수이용 등 시각장애 편의시설 점자 표기 설치</li> <li>• 시각장애인용 피난안내 촉지도 4개 극장 모두 설치</li> <li>• 청각장애인용 음성증폭기(보청기기) 설치</li> <li>•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노후화 된 장애인승강기 교체</li> </ul>
	2	공연장 접근, 출입구, 공연장 내부 이동, 공연 관람, 예술극장 내 부대시설 이용 전 과정에 대한 장애인 관람객의 접근성 및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표지판(78개), 점자안내판(17개), 음성안내장치(1개), 점자 피난안내도(4개) 설치</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휠체어 관람객을 위한 좌석관람석을 운영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객과 조력자를 위한 좌석 관람석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크예술극장 대극장 : 휠체어석 6석 외 기존객석 한 개 열전체 제거 후 휠체어석 8석 추가운용 가능 (총14석)</li> <li>- 아르크예술극장 소극장 : 휠체어석 1석~2석</li> <li>-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휠체어석 6석</li> <li>-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휠체어석 3석</li> </ul> </li> <li>• 휠체어를 사용하는 출연자의 무대 및 대기실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턱이 있는 분장실의 경우 맞춤형 경사로 제작</li> <li>- 계단이 있는 분장실의 경우 경사로 자체 제작으로 이동용이</li> <li>- 무대와 대기실 사이 턱이 없어 이동약자 편의성 증대</li> <li>- 이 외 장애인 출연자의 편의증대를 위해 현장소통 후 지속적으로 반영</li> </ul> </li> <li>• 전통휠체어의 이동 및 회전반경을 고려해 분장실 등 출입구 폭을 확대하고 출입구와 인접한 내부 시설물 배치를 변경하는 등 공연자의 시설 접근성 개선 지속 필요</li> </ul>
4	예술극장 무대 및 대기실, 분장실 등 무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출연자의 접근성과 예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			
5	시·청각 장애인이 공연내용을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어, 자막해설, 음성 해설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장인력을 지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매 시 장애인할인으로 예매한 관객의 경우 티켓 배부 시부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 후 하우스매너저 또는 관객안내원 지원</li> <li>• 하우스매너저 및 관객안내원 대상 연 1회 이상 &lt;장애인 관객 응대 교육&gt;진행</li> <li>• '18년 8월 &lt;장애인 관객 응대 매뉴얼&gt; 개발 후 매년 개선 활용</li> <li>• '21년부터 수어, 자막해설, 음성해설 등 배리어프리 공연을 공연</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단체에서 진행할 경우 예술극장 자체에서 해당 단체 지원(구체적 지원 내역 논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어, 자막해설, 음성해설을 진행할 경우 공간구성 및 세부운영 방향 정리 지원</li> <li>• 공연 관람에 편의제공이 필요한 시 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해, 베리어프리(BF) 공연을 선정(또는 쿼터제 도입) 및 제공하고, 편의제공 점진적 확대</li> </ul>
	소 계	2	3			
안전 보건	1 비상사태 발생 시 공연참여자 및 관람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피매뉴얼 제작 후 매년 개정</li> <li>• 관객대피동선 전격 재검토 통한 관객안내원 인력 배치 증원(대극장, 소극장 각 1~2명) 및 대피매뉴얼 보완, 시행</li> <li>•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전략 향상을 위한 객서비스인력 대상 정기교육 실시(20년 기준 안전교육 총 7회, 22.5시간, 133명)</li> <li>• 극장 출입 방문객 보안 관리 강화(관객안내원 출입카드 개인지급 통한 외부인 식별 및 보완 관리 기능)</li> <li>• 관객 안전 비상상황 발생 시 휴식 및 안정 취할 수 있는 독립 공간 '관객안전실' 조성</li> <li>• 공연장 시설물과 관객의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위원회 무대 감독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음(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제2장 2조 3항 라)</li> </ul>
	2 위생과 안전, COVID-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작업장, 편의시설 등에 대한 소독 방제를 실시한다.	√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장 환기 및 소독 매뉴얼 마련·시행</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방역 방법</th> <th>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환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극장 출입문(객석 및 로비 전체) 개방 및 공기분무 가습기 가동</li> <li>1차 : 9:00 ~ 9:15</li> <li>2차 극장 무대감독이 공연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 단체의 무대감독과 협의하여 환기(12:00이후 / 10~15분)</li> </ul> </td> </tr> <tr> <td>소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4회 이상 특별방역 실시 (외부 방역전문업체 의뢰)</li> <li>일 2회 이상 무대/객석/공연 창작공간/사무공간/화장실 등 소독약 분무 후 환기</li> <li>공연 전 관객 접촉예상 부분(문 손잡이/팔걸이)</li> </ul> </td> </tr> <tr> <td>मित 제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객안내원 근무준비를 위한 환복 시 소극장/대극장 관객안내원 출근시간 조정하여 밀집도 낮춤</li> <li>객석 내 반입 제한물품만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여 공연종료 후 물품반환을 위해 물리는 관객의 밀집도 낮춤</li> <li>공연 종료 후 출연자와 방문객 간의 만남을 아예 또는 넓은 공간(중앙로비)로 안내</li> <li>공연 전 후 로비에서 관객안내원 및 하우스매니저가 밀집한 관객에게 직접 안내 지속</li> <li>승강기, 출입구 등 밀집장소 내 거리두기 표기 및 안내 지속</li> </ul> </td> </tr> </tbody> </table>	방역 방법	세부 내용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극장 출입문(객석 및 로비 전체) 개방 및 공기분무 가습기 가동</li> <li>1차 : 9:00 ~ 9:15</li> <li>2차 극장 무대감독이 공연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 단체의 무대감독과 협의하여 환기(12:00이후 / 10~15분)</li> </ul>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4회 이상 특별방역 실시 (외부 방역전문업체 의뢰)</li> <li>일 2회 이상 무대/객석/공연 창작공간/사무공간/화장실 등 소독약 분무 후 환기</li> <li>공연 전 관객 접촉예상 부분(문 손잡이/팔걸이)</li> </ul>	मित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객안내원 근무준비를 위한 환복 시 소극장/대극장 관객안내원 출근시간 조정하여 밀집도 낮춤</li> <li>객석 내 반입 제한물품만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여 공연종료 후 물품반환을 위해 물리는 관객의 밀집도 낮춤</li> <li>공연 종료 후 출연자와 방문객 간의 만남을 아예 또는 넓은 공간(중앙로비)로 안내</li> <li>공연 전 후 로비에서 관객안내원 및 하우스매니저가 밀집한 관객에게 직접 안내 지속</li> <li>승강기, 출입구 등 밀집장소 내 거리두기 표기 및 안내 지속</li> </ul>
방역 방법	세부 내용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극장 출입문(객석 및 로비 전체) 개방 및 공기분무 가습기 가동</li> <li>1차 : 9:00 ~ 9:15</li> <li>2차 극장 무대감독이 공연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 단체의 무대감독과 협의하여 환기(12:00이후 / 10~15분)</li> </ul>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4회 이상 특별방역 실시 (외부 방역전문업체 의뢰)</li> <li>일 2회 이상 무대/객석/공연 창작공간/사무공간/화장실 등 소독약 분무 후 환기</li> <li>공연 전 관객 접촉예상 부분(문 손잡이/팔걸이)</li> </ul>													
मित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객안내원 근무준비를 위한 환복 시 소극장/대극장 관객안내원 출근시간 조정하여 밀집도 낮춤</li> <li>객석 내 반입 제한물품만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여 공연종료 후 물품반환을 위해 물리는 관객의 밀집도 낮춤</li> <li>공연 종료 후 출연자와 방문객 간의 만남을 아예 또는 넓은 공간(중앙로비)로 안내</li> <li>공연 전 후 로비에서 관객안내원 및 하우스매니저가 밀집한 관객에게 직접 안내 지속</li> <li>승강기, 출입구 등 밀집장소 내 거리두기 표기 및 안내 지속</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외 상황에 맞게 밀집제한 안내 지속</li> <li>• 관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운영 공간 확대 및 안내 인력 1~2인 증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코 대극장: 공연 종료 시 로비와 통하는 모든 출입문 개방, 분장실 출입 통제</li> <li>- 아르코 소극장: 관객 대기 공간 확장, 공연 종료 후 관객을 2그룹으로 나눠 순차 퇴장 안내</li> <li>- 대학로 대극장: 공연 전후 건물 2층(분장실층) 로비 까지 관객 대기공간으로 사용</li> <li>- 대학로 소극장: 공연 종료 시 관객 퇴장로를 추가하여 퇴장 동선 이원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li> </ul>				
	3	✓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별 고열자 및 의심자에 대한 격리공간 조성 운영 (진료소 이동전 대기장소)</li> <li>• 발열의심환자 발생 시 병원 및 보건소 등 연락체계 구축</li> <li>• 공연장별 출입구 일원화 실시 및 타출입구 잠정폐쇄, 열감지카메라 2대 운영</li> <li>• 마스크 미착용자 건물 출입 불가, 미소지 관객에 한하여 출입구에서 제공</li> <li>• 고열자 출입제한</li> </ul> </td> </tr> </tbody> </table>	대상	세부 내용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별 고열자 및 의심자에 대한 격리공간 조성 운영 (진료소 이동전 대기장소)</li> <li>• 발열의심환자 발생 시 병원 및 보건소 등 연락체계 구축</li> <li>• 공연장별 출입구 일원화 실시 및 타출입구 잠정폐쇄, 열감지카메라 2대 운영</li> <li>• 마스크 미착용자 건물 출입 불가, 미소지 관객에 한하여 출입구에서 제공</li> <li>• 고열자 출입제한</li> </ul>
대상	세부 내용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별 고열자 및 의심자에 대한 격리공간 조성 운영 (진료소 이동전 대기장소)</li> <li>• 발열의심환자 발생 시 병원 및 보건소 등 연락체계 구축</li> <li>• 공연장별 출입구 일원화 실시 및 타출입구 잠정폐쇄, 열감지카메라 2대 운영</li> <li>• 마스크 미착용자 건물 출입 불가, 미소지 관객에 한하여 출입구에서 제공</li> <li>• 고열자 출입제한</li> </ul>									
	4	✓				<p>계약직, 단기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p> <p>임산부,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COVID-19 감염을 포함한 안전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p>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5	공연제작주체 및 관람객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COVID-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준수를 요구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별 배치되어있는 일회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자율적으로 사용안내</li> <li>• 열화상 감지 카메라 설치된 출입구로 입장하여 체온 확인 후 공연 관람</li> <li>• 코로나19 현황에 맞춰 극장 방문객 대상 전자 문진행 및 내용 수정</li> <li>• 비상대응 물품 구매 후 물품 및 감염증 예방 수칙 안내 문구 비치하여 사용 요청</li> <li>• 코로나19 공연장 뉴노멀 보건관리 공연장 직원대상 교육</li> <li>• 코로나19 공연장 방역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개선방안 자문 실시 및 반영</li> <li>• 관객서비스인력 대상 감염병 확산 방지 교육 실시</li> <li>• 대관객 장소(매표소, 물품보관소 등) 비말차단 투명 칸막이 전수 설치, 대고객서비스인력 전원 마스크, 라텍스 장갑 사용</li> <li>• 건강 이상자 및 감염원 접촉 의심자 등 근무 식제, 귀가 조치</li> <li>• 관객안내원 대상 설문 및 일일 자가 문진 진행, 1개 이상 해당자 귀가 및 근무 식제 조치</li> <li>•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 따라 관객안내원 운영 방식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인 이상 모임 금지(내부 지침)에 따라 관객안내원</li> </ul> </li> </ul>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p>해당 없음</p> <p>정보 없음</p> <p>아니요</p> <p>해당 없음</p>
						<p>대상 교육 전체 취소(서비스·안전·심화 등) 단, 필수 교육 취소는 불가피하여 최소 인력 대상으로 교육 전후 체온 확인 및 자가문진 진행 - 관객안내원 탈의실 운영 지침 변경(관객안내원 출근 시간 조정, 관객안내원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지속 등) • 병원 진단 후 코로나19와 무관하며, 건강상태에 문제없음이 확인된 경우 근무 복귀 • 공연장 입주상가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30% 인하 (20년 2월분~) • 재택근무 : 영유아 및 초등학교(저학년/3학년)의 휴원·후교시 재택근무 가능</p> <hr/> <p>•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장 건물에 입장하는 전 방문객 체온 확인 진행 • 전체 관객 및 공연장 방문객 대상 전자문진표 작성 후 티켓 수령 • 물품보관소 운영 시 객석 반입 불가 물품 외 개인 물품 보관 및 담요 대여 중지 • 카페 공간 제외 로비를 포함하여 공연장 내 식음료 섭취 제한 • 거리두기 객석제 시행 • 예매자 대상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p>
	시설 사용자 대상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객 참여형 공연 및 다수밀집 행사 제한 (관객과의 대화, 리셉션, 케이터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레스크롤 및 오픈리허설 진행 시 참석자 전원 개인정보 및 문진표 작성 후 객석 입장</li> </ul> </li> <li>• 공연 전 관객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요령' 안내멘트 송출</li> <li>• 공연 종료 후 배우 등 지인과의 만남 시 마스크 착용 필수 혹은 인사 자제</li> </ul>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운영규정 제18조(무대 안전교육)에 공연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li> <li>•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제4조(무대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① 공연에 참여하는 스태프 및 출연자들의 모든 공연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② 미이수 대관자의 공연 진행을 제한 근거 마련 ③ 대관자가 무대 작업을 위해 이동식사다리(A형)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서 준수 명시" ④ 대관자는 무대직업(셋업 및 철수)시 비래 및 추락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모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음</li> </ul>
	소 계	6				
	합 계	18	3			